

제정 2010. 08. 11

개정 2011. 02. 01

개정 2011. 05. 19

개정 2011. 08. 29

개정 2012. 11. 08

개정 2014. 02. 21

개정 2014. 03. 11

개정 2014. 03. 27

개정 2014. 06. 17

개정 2014. 11. 18

개정 2014. 11. 26

개정 2015. 01. 08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에 의한 태권도 승(품)단 심사(이하 "승(품)단 심사"라 한다)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승(품)단 심사 업무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승(품)단 심사시행에 관한 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심사구분)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1항에 의한 심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급심사 : '품', '단'을 취득하기 위한 하위 단위로서 태권도 수련과정에 따라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자가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2. 승품심사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단, 4품에 응시하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승단심사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4. 특별승단 심사 : 장애인 심사·월단심사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승단심사
 5. 명예단 심사 : 태권도발전 및 공헌자에 대한 수여자격 심사
 6. 추서단 심사 : 태권도공로자가 타계 하였을 경우 상위 단 추서 자격 심사.
- ② 위 3호 특별승단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과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실기심사는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등 해당 승(품)단 심사에 필요한 실기 과목으로 시행한다.
 2. 이론심사는 필답과 논술심사가 있다.
 3. 필요시 각 품·단별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품·단별 심사과목은 [표1]의 품·단별 표준 심사 과목의 범위 내에서 심사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과목을 신설 및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심사수수료)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수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1. 국기원이 승(품)단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또는 해외추천사범이 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위 1호, 2호 외 심사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4. 위 2호와 3호에 의한 심사수임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2항 2호에 따라 시행수수료를 산정하여 국기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물가변동률 및 원가조사를 통해 심사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사수임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자로부터 심사수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⑤ 심사수수료는 국가별 국민의 실질적 구매력을 감안한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에 따라 등급을 두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⑥ 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미수교국 등 보급 차원에 있는 정책적인 국가

2.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을 당한 지역 및 국가

3. 기타, 감면이 요구된다고 판단된 지역 및 국가

4.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장애우 및 극빈자

⑦ 심사수임단체에게 승(품)단 심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승(품)단 연한 및 연령에 의한 응시자격기준을 [표2]와 같이 정한다.

②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 1항 2호에 따라 4품에 대한 응시 자격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이 갖는다.

③ 위 1항 외에 보수교육 등을 응시자격으로 정할 수 있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응시자가 국적 이외 제3국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추천권) ① '심사추천권'이라 함은 심사 응시 및 그 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적, 행정적 절차로서 태권도 사범과 태권도단체, 기관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② 국기원 4단 이상자로서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며, 추천권자는 응시자의 수련정도과 일정기간 수련정도에 대한 보증으로서 응시에 대한 교육적, 행정적 책임을 지며, 보유단 미만자의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 대하여 심사를 추천할 수 있는

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단, 4단 이상자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에 한하여 심사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기관은 필요시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외 응시자로서 심사추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승(품)단 심사시행 권한을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에 위임하지 않은 국가 및 지역은 심사추천권을 가진 국기원 등록도장 사범이 국기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⑥ 국기원과 위임계약을 맺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개별 태권도장에 심사추천을 위한 ID를 부여할 수 있다. 이 ID는 온라인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만을 대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태권도 종목 체육시설업으로 관에 신고를 필한 태권도장 및 태권도 관련 학과 인가를 받은 대학교 중 심사추천 ID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심사수임단체에 직접 심사 신청할 수 있다.

⑧ 위 심사추천 절차 ②~⑦항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승(품)단 심사업무 질서를 혼란시킨 경우, 해당 심사수임단체·사범 및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조(자격특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응시자격 특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권도 유공자에 대해서는 7단 이하에 대하여 연한 및 연령의 자격기준 단축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표3]과 같다.

2. 대학(태권도학과·태권도전공)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종료 전 까지 3단을 보유하고, 4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예정자(학사 이수학점 중 80% 이상 이수한 자) 에게는 4단의 응시자격을 각각 부여한다. 단, 월단은 허용치 않는다.

3. 월단심사 및 기타 자격특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 자격특례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임 승인 등의 절차)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심사위임할 경우 위임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 승(품)단 심사시행 위임범위는 심사수임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임을 받고자 하는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태권도 승(품)단 심사 위임 신청서

2. 단체 연혁

3. 임원 명단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5. 조직도 현황

6.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7.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8. 승(품)단 심사시행계획서

9. 승(품)단 심사시행수수료 부과 계획서

③ 기존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위임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심사위임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품)단 심사 위임에 따른 위임계약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심사수임단체의 권한과 의무) ① 승(품)단 심사시행에 대한 심사수임단체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시행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제2항 3호에 따른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기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사수임단체에 대하여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심사수임단체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수임단체는 매년 12월말까지 심사평가위원 구성과 연간 심사일정 등을 포함한 심사시행 계획을 국기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수임단체는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심사자명부(표4)와 심사결과를 7일 이내에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3.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시행에 대한 시행수수료를 책정하여 국기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심사수임단체는 태권도심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11조(심사시행) ① 국기원과 심사수임단체는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1.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에 심사평가위원 또는 감독관을 요청하여 시행한다.

2. 태권도 1~4품 및 1~3단까지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4~5단은 실기와 필답심사를 하며, 6단 이상은 실기와 논술심사를 시행한다. 단, 심사수임단체의 필요시 국기원이 규정한 심사과목 이외의 과목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태권도 4단 이상의 심사는 국기원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수임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 제3호 정기심사에서 1개 과목이 실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수수료를 면제받고 실격과목에 대하여 차기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수시심사는 제외된다.

③ 장애인심사·월단심사 및 정책적 판단에 따른 특별승단 심사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 제2호의 필답 및 논술심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논술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응시자는 자국어로 작성한 논술의 한국어 번역본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한 심사시행으로 응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6조 3항에 따른 자격조

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위원 구성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자격증을 갖춘 자로 한다.
2. 저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태권도 6단 이상 보유자로서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3급 이상의 소지자로 구성한다.
3. 고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태권도 9단 보유자로서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 구성한다. (단, 해외의 경우 1~4품·단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4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6단 이하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6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7단 이하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8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급 소지자)
 - ② 고단자심사평가위원은 국기원장이 임명하고,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승(품)단 심사시행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저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5단 이하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실시한다.
 - ④ 고단자심사평가위원회는 6단 이상의 태권도 승단 심사를 실시한다.
 - ⑤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심사과목별 심사평가위원은 각 3인 또는 5인으로 운영하고 응시자 및 심사특성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 1호 외 심사 진행요원은 심사시행 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 심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사심의위원회는 국내 심사심의위원회와 해외 심사심의위원회로 구분하고, 위원회별 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심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8조 1항에 따라 심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사관리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필요시 심사평가위원 등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심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5조(감독관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9조 1항에 따라 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감독관은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심사수임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④ 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심사평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4호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 및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과목별 평가기준은 [표5]와 같다.
2. 실기심사는 국기원의 규정된 동작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실기심사 평가기준 및 요령은 [표6]과 같다.

4. 필답심사 평가는 20문항 중 12문항 이상의 정답을 얻은 경우 합격 처리한다.
5. 논술심사 평가기준은 [표7]과 같다.
6. 면접 심사는 태권도활동 경력 및 공적사항 등을 평가한다.
7. 심사 과목 중 1개 과목이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 ② 심사과목별 채점표는 [표8]과 같다.
- ③ 심사평가에 대한 심사결과표는 [표9]와 같다.

제17조(심사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2호에 따라 심사장의 제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실기 심사장의 최소 면적은 가로 15m × 세로12m(180㎡ = 약 55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품새 심사장의 면적은 1회 기준으로 1인 20㎡(약6평), 3인 60㎡(약18평), 5인 90㎡(약30평), 9인 170㎡(약54평)의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3. 겨루기 심사장의 면적은 2인 기준으로 가로 10m × 세로10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격파 및 특기 심사장의 면적은 1인당 20㎡(약6평)의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5.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 과목당 33㎡(약10평)이상의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6. 실기 심사장 바닥의 재질은 안전을 고려하여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루, 고무매트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7.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및 재난시설 등의 안전이 허가된 장소여야 한다.
- ② 심사장 배치 및 평면도는 [표10]과 같다.
- ③ 단, 심사수임단체는 국기원이 규정한 심사장을 준수하되, 필요시 각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복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6호에 따른 복장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는 국기원이 지정한 태권도복과 띠를 착용해야한다. [표11]
2. 승품심사 응시자는 품 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단, 4품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승단심사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해야한다.
4. 도복 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착용할 수 없다.
5. 도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할 수 없다. 단, 여성의 경우 백색 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6. 심사평가위원과 진행요원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7. 응시자의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는 [표12]와 같다.
- ② 단, 심사수임단체는 국기원이 규정한 복장을 준수하되, 필요시 각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대책)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7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1.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2.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 및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승(품)단 심사시행 단체는 응시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 승(품)단 심사시행 단체는 겨루기 심사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안전보호용구(머리, 몸통, 낭심 등)를 착용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질서유지) ① 심사장 내에는 감독관,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의무요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심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해당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사항 등)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5조 3항에 따른 기타 행정처리 등을 정한다.

② 승(품)단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표13]
2. 국내 1품(단) 응시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3.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매
4. 장애인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8,9단 응시자는 태권도 활동경력 및 이력서 각 1부

③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 2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의 제출서류 외 보수교육 등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명예단"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예단" 요청서 1부
2. 이력서 및 공적조서 1부[표14]

⑥ 승(품)단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재학(재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중 1부
2. 군인의 경우 근무명령서
3. 각국 대사관 입증서류
4. 추천사범의 확인서

5. 기타 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된 서류. 단, 정부위탁 등 특별한 국기원 교육 등에 참석하여 관련 이수증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⑦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변경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2. 인적사항 변경의 법적 결정문 또는 변경 사실을 공증한 인증서
3. 국기원 발행 품(단)증 원본과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여권, 주민등록초(등)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4. 기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⑧ 응시자격 특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경기 실적 특례자는 각 국가 태권도협회장 또는 주최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2. 공로실적 특례자는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확인서

- 3. 본 규칙 제8조 1항 2호에 따른 자격특례자는 총 이수학점 대비 80% 이상의 학점 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재학증명서(4년제 대학교의 경우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 4. 기타 특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⑨ 승(품)단 심사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따른 행정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0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01. 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